

5 가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장애에 근거한 차별

- 1 뉴저지 주 차별금지법(LAD)은 주거 제공, 고용 및 공공장소에서 실제 장애나 인식된 장애에 근거하여 차별하거나 확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주거 제공자, 고용주, 직장 동료, 경찰관, 상점 주인 등으로부터 차별이나 확대를 받으셨다면 민권국(Division on Civil Rights, 이하 "DCR")에 [민원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2 LAD는 장애에 대한 정의를 미국 장애인법(ADA)에서 정한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LAD 아래 EA 장애는 모든 신체적 장애와 질병, 상해, 또는 선천적 결함에 의해 병과 정상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하고 의료 전문가에 의해 확인될 수 있는 모든 정신적, 심리적 장애나 발달 장애를 포함합니다. LAD는 장애 기준으로 생활하는 데 한 가지 이상 중대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애는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경미할 수 있습니다.
- 3 LAD는 실제 장애나 인식된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장애가 있다는 억측을 하거나 과거의 장애에 근거한 차별에 직면했을 때도 보호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호텔은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고객의 숙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4 그 누구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장애에 기초한 확대에는 모욕적인 말, 조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장애로 인해 남과 다르게 대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대 행위가 있을 경우 책임자는 고용, 주거 제공, 또는 공공장소 등과 관계없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5 LAD의 장애인 보호 규정은 물질 남용이나 알코올 중독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것은 고용주는 직원이 이전에 중독 치료를 받았거나 현재 회복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직원을 차별하거나 해고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규제 물질 및 알코올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사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장애로 간주되지 않으며 LAD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신다면, [NJCivilRights.gov](#)를 방문하시거나, 또는 1.833.NJDCR4U로 연락해주시십시오. 민권국(DCR)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뉴저지 내 모든 사람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차별 금지법 (LAD)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차별 금지법 (LAD)은 보복으로부터 귀하를 보호합니다. 누구도 차별 금지법 (LAD) 위반 가능성을 신고하거나, 사내, DCR 또는 법원에 차별 관련 민원을 제기하거나, 차별 금지법 (LAD)에 따른 기타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보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언어 버전은 DCR 웹사이트 [리소스 섹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신다면 [NJCivilRights.gov](#)를 방문하시거나 1.833.NJDCR4U로 연락해주시십시오



뉴저지 법무장관집무처(NJ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NJCivilRights.gov](#)



DIVISION ON
NJ CIVIL RIGHTS
@CivilRightsNJ #CivilRightsNJ #StandUpAgainstHate



2024년 3월 11일